

평생교육청소년학과

●평생교육사 2급(국가자격증)

[기관]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(www.nile.or.kr)

[자격요건] **평생교육사 자격관리** <https://lledu.nile.or.kr/>

-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-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-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
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(3급 자격취득 이전/이후 경력 모두 인정)

[이수과목] **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.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.**

이수과목		
필수과목	선택과목	
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, 평생교육실습(4주 현장실습 포함)	실천영역	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독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
	방법영역	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
	※선택 5과목 이수 ※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	

※밀 줄 친 과목들은 평생교육청소년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음

[시험] : X

[실습] : 4주간(20일, 160시간 이상)

●청소년지도사 2급(국가자격증)

[기관] : 한국산업인력공단 (www.hrdkorea.or.kr)

[자격요건]

- 대학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
-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
-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(예정)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
-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

-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

[이수과목]

이수과목
청소년 육성제도론, 청소년 지도방법론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청소년 문제와 보호, 청소년 문화, 청소년 활동, 청소년 심리 및 상담

※ 밑 줄 친 과목들은 평생교육청소년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음

[실습] : X

[시험]

※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4항에 의거 필기시험면제가 시행되고 있다.

- '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·3호 및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필기시험을 면제한다.'라고 규정

필기시험 -8과목	교시	시험과목
	1교시	청소년육성제도론, 청소년지도방법론, 청소년심리 및 상담, 청소년문화
	2교시	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청소년문제와 보호
면접시험		[면접 주요내용] -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- 용모,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-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-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- 창의력과 의지력, 지도력 등

[합격기준]

- 필기시험

: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
- 면접시험

: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(15점 만점)이상인자로 함

※ 단,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